■ 총포・도검・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6호서식] <개정 2020. 12. 31.>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[ ]총포 | [ ]도검 | [ ] 제조업 | 폐업(폐지)・휴업신고서 |
| [ ]화약류 | [ ]분사기 | [ ] 판매업 | |
| [ ]전자충격기 | [ ]석궁 | [ ] 임대업 | |
| | | [ ] 저장소 | |

| 접수번호 | 접수일자 | 처리기간 즉시(3근무시간 이내) |
|---|---|---|

| | | |
|---|---|---|
| 허가 사항 | 허가번호 | |
| | 허가연월일 | |
| 허가받은 자 | 성 명 | 생년월일 |
| | 주 소 (전화번호 : ) | |
| | 사무소 소재지 | |
| | 사업명 | |
| 폐업・휴업 사유 | | |

「총포・도검・화약류 등 단속법」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위와 같이 (총포・도검・화약류・분사기・전자충격기・석궁) (제조업・판매업・임대업・저장소)의 폐업(폐지)・휴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**경찰청장, 시・도경찰청장** 귀하

| | | |
|---|---|---|
| 첨부서류 | 허가증 및 완성검사 합격증 | 수수료 없음 |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